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

# 審査報告書

1991. 12. 27.

內 務 委 員 會

# 目 次

1.	審 査 經 過	2
2.	提案說明要旨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2
3.	專門委員 檢討 要旨	3
4.	質疑 및 答辯 要旨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5
5.	討 論 要 旨	5
6.	審査結果	5

### 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

# 審査報告

1991年 12月 27日 內務委員會

### 1. 審 杳 經 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案者: 1991年 12月 18日, 大田直轄市長

나. 回 附 日 字: 1991年 12月 19日

다. 上 程 日 字: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(定期會)

第6次 內務委員會(1991. 12. 23)

上程,審議,議決

### 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者: 財務局長)

#### 가. 提案理由

- 地方稅法 第 3條 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治團體의 地方稅에 關한 條例를 制定 運營하였으나 條例의 內容이 地方稅法과 重複 된 事項이 많아 地方稅法이 改正되면 條例도 改正하여야 하는 弊 端이 있으므로
- 地方稅法이 法律 第 4415號 ('91. 12. 14)로 많은 內容이 改正公布됨에 따라 地方稅法上 條例로 規定하도록 한 標準稅率 및 制限稅率 稅目의 稅率과 기타 필요한 事項을 定하여 全文改正하고져함.

#### 나. 主要骨子

- ㅇ 地方稅法上 條例로 定하도록 한 事項 規定
  - 構販 事業등 不動産 및 事業用 航空機의 輕減率
  - 地域開發稅의 賦課地域 指定 等
- ㅇ 標準(制限) 稅率과 다르게 定할수 있도록 한 稅目의 稅率調整
  - 住民稅, 自動車稅, 屠畜稅, 都市計劃稅, 地域開發稅 等

### 3. 專門委員 檢討 要旨(專門委員:案鍾贊)

本 改正 條例案은 地方稅法이 法律 第 4415號 ('91 12. 14)로 改正 公布됨에 따라 條例의 內容이 地方稅法과 重複된 事項이 많아 法 이 改正되면 條例도 改正하여야 하는 弊端이 있으므로 地方稅法 과 重複된 事項을 除外하고 地方稅法上 條例로 定하여 施行하도 록 한 事項과 其他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全文 改正하는 事案으 로서

- 첫째, 取得稅와 登錄稅에 있어 地方稅法 第 110條의 4 第 2項 第 3號 및 第 128條의 3 第 2項 第 1號의 規定에 의거 購販事業等 不動産과 事業用 航空機에 對한 取得稅와 登錄稅의 輕減率을 100分의 50을 超過하여 條例로 定하여 輕減할 수 있도록 한 事項을 現行 條例대로 100分의 75를 輕減하도록 定하였으며 (第 18 條, 第 22條)
- 둘째, 住民稅의 稅率을 地方稅法 第 176條 第 3項의 規定에 의거標準稅率의 100分의 50의 範圍內에서 加減 調整하여 條例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한 事項을 稅率의 加減 調整 없이 地方稅法上의 標準稅率로 定하였고 (第 26條)

- 셋째, 自動車稅의 稅率을 地方稅法 第 196條의 5 第 3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氣量 等을 勘案하여 標準稅率의 100分의 50까지 超 過하여 條例로 稅率을 定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한 事項을 稅率의 加算 調整없이 地方稅法上의 標準 稅率로 定하였으며 (第 28條)
- 넷째, 屠畜稅의 稅率을 地方稅法 第 234條의 2 第 3項의 規定에 의거 課稅標準의 1000分의 10 以下로 하여 條例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한 事項을 現行條例대로 1000分의 10으로 定하였고(第 42條)
- 다섯째, 都市計劃稅의 稅率을 地方稅法 第 237條 第 2項의 規定에 의 거 1000分의 3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條例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한 事項을 現行 條例대로 1000分의 2로 定 하였으며 (第59條)
- 여섯째, 地域開發稅의 稅率을 地方稅法 第 257條 第 2項의 規定에 의 거 標準稅率의 100分의 50 範圍內에서 加減 調整하여 條例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한 事項을 加減 調整없이 地方稅法 上의 標準稅率로 定한 事項임.
  - (第 75條, 第 77條, 第 82條)
  - ※ 地域開發稅는 新設稅目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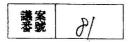
本 案은 地方稅法의 改正으로 地方自治團體에게 어느정도 주어진 稅 率調整權을 積極的으로 行使하지 못한 側面도 있으나, 他 市道와의 衡平性 維持 및 市民의 稅 負擔을 考慮한 適正한 改正案으로 思料됨.

- 4. 質疑 및 答辯 要旨:省 略
- 5. 討 論 要 旨:省 略
- 6. 審 査 結 果: 原案 可決

大田直轄市稅條例改正條例案

大田直轄市

# 大田直轄市稅 條例 改正 條例案



1991. 12. 20. 大田直轄市長

#### 1. 提 案 理 由

- 가. 地方稅法 第 3條 第 1項의 規定에 依하여 自治團體의 地方稅에關한 條例를 制定 運營하였으나 條例의 內容이 地方稅法과 重複된 事項 이 많아 地方稅法이 改正되면 條例도 改正하여야 하는 弊端 이 있 으므로
- 나. 地方稅法이 法律 第 4415號 ('91. 12. 14)로 많은 內容이 改正公布 됨에 따라 地方稅法上 條例로 規定하도록 한 標準稅率 및 制限 稅 率稅目의 稅率과 기타 필요한 事項을 定하여 全文改正하고져 함.

#### 2. 主要骨子

- 가. 地方稅法上 條例로 定하도록 한 事項 規定
  - 購販 事業등 不動産 및 事業用 航空機의 輕減率
  - 地域開發稅의 賦課地域 指定 等
- 나. 標準(制限) 稅率과 다르게 定할수 있도록 한 稅目의 稅率調整
  - 住民稅, 自動車稅, 屠畜稅, 都市計劃稅, 地域開發稅 等

#### 3. 參考事項

- 0 地方稅法
  - 第 110條의 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第 112條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 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. 다만, 第 2號, 第 3號 및 第 5號 의 경우 取得日로부터 1年 이내에 정당한 事由없이 그 事 業에 직접 使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輕減된 取得稅를 追徵한다.
    - 3. 第 1項 第 14號 내지 第 16號의 法人이 構販事業 等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事業에 직접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不動産.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그 輕減率을 100分의 50을 초과하여 定할 수 있다.
    - 7.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用 航空機. 이 경우 國際線에 주로 就航하는 航空機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그 輕減率을 100分의 50을 超過하여 定할수 있다.
  - 法 第 176條 ③ 市長・郡守는 당해 年度分의 住民稅의 稅率을第 1項 및 第 2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 範圍안에서 加減調整하여 定할수 있다.
  - 法 第 196條의 5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의 市長・郡守・區廳長은 第 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條例가 定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稅의 稅率을 排氣量등을 勘案하여 第 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까지 超過하여 정할 수 있다.
  - 法 第 234條의 2 ③ 市長・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年度分의 屠畜稅의 稅率을 1000分의 10 이하로 定할 수 있다.

- 法 第 237條 ② 市長・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年度分의 都市計劃稅의 稅率을 第 1項의 標準稅率과 다르게 定할 수 있다. 이 경우 稅率은 그 價額의 1000分의 3을 超過 할 수 없다.
- 法 第 257條 (課稅標準과 稅率) ① 地域開發稅의 課稅標準과 標準 稅率은 다음 各號와 같다.

1. 發電用水: 發電에 이용된 물 10m³ 當 1원

2. 地 下 水: 開發하여 採水된 물 1㎡ 當 10원

3. 地下資源: 採鑛된 鑛物價額의 1000分의 1

4. 컨테이너: 컨테이너 1티이유 (TEU) 當 15.000원

② 道知事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開發稅의 稅率을 第 1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 範圍안에서 加減 調整할 수 있다.

o 市政調整委員會 審議

○ 書面審議: '91. 12. 19 (木)

o 審議結果:原案 可決

(全體委員 16名 中 15 名 贊成)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# 대전직할시세조례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대전직할시세 조례

### 제1장 총 칙

### 제1절 통 칙

제1조(과세의 근거) 대전직할시세(이하 "시세"라 한다)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 준,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- 1. 세무공무원 : 대전직할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.
- 2. 납세고지서: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, 성명, 과세표준액, 세율, 세액, 납기,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세목)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.

-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.
- 1 .취득세
- 2 .등록세
- 3. 주민세
- 4. 자동차세
- 5. 농지세
- 6. 담배소비세
- 7. 도축세
- 8. 마권세
-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.
- 1 .도시계획세
- 2. 공동시설세
- 3. 지역개발세
- 제4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지방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.
- 제5조(조례시행에 관한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제 2절 부 과 징 수

제6조(부과징수사무의 위임) ①시장은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(출장소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 다만,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부과 징수한다.

-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2륜 자동 차등록에 따른 시세부과징수사무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등록을 동장 에게 신청할 경우의 시세부과징수사무를 제외한다.
- 제7조(납기한의 연장)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(이하 "영"이라 한다)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9조의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  -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
  -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.

- 제8조(허가등의 제한) 구청장이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  - 1.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
  - 3.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
- 4. 기타 참고사항
- 제9조(징수유예신청)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)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탈루된 징수금의 처리) 누락·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 은 가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.
- 제12조(서류의 경유등)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.
  - ②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 세의 규정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13조(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)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(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)를 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.

제14조(공시송달)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5조(시세징수교부금) ①구가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지방세 심의위원회)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 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,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다른 분과위 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-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제 2 장

### 제 1 절 취 득 세

제17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 법 제107조, 제108조, 제109조, 제110조, 제110조의 3 및 제1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취득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- 2. 취득년월일
- 3. 취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
- 4. 기타 참고사항

제18조(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) ①법 제110조의 4 제2항 제3호에서 "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"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
- 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
- 2.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
- 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
-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하다.
- 제19조(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등)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.
  - ②영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토지 : 매년 1월 1일
  - 2. 건물 및 선박 : 매년 1월 1일
  -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.
- 제20조(취득신고 및 자진신고납부등)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·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.
  - 1.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  - 2. 취득년월일과 취득의 사유
  - 3. 취득물건의 소재지
  - 4.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 · 지목 · 면적 및 용도
  - 5.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(품종) · 수령 · 주수 · 축적량(재적)

- 6.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 · 구조 · 바닥면적 · 연면적 및 용도
- 7. 차량 · 중기에 있어서는 종류 · 연식 · 용도
- 8.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· 명칭 · 정계장 · 구조 · 용도 · 총톤수 또는 적재량
- 9.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·광구의 면적·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
- 10.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·어장의 면적·어업의 면허 연월 일과 면허번호
- 11.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·이륙중량·적재능력·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
- 12. 골프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의 명칭·소재지·소유자·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
- 13.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
- 14.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·거소·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-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·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·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2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장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건축물의 신축·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·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 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,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, 구조,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⑤선박·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시공 자의 주소·거소·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 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·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⑥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·시설·가액·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, 면적, 시가, 토지소재지,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,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
- 2. 주주 또는 사원명부(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)
- 3. 취득년월일과 취득원인
- 4. 재산목록
- 5. 제1항 각 호의 해당사항
- 6. 과세표준액과 그 산정근거
- 7. 기타 참고사항

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며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(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제신청) 법 제10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 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취득자의 주소 · 거소 · 성명 또는 명칭
- 2. 취득물건의 소재지
- 3. 취득년월일 · 벌채허가 연월일 및 벌채기간
- 4. 수종・수령・주수・축적량(재적)
- 5. 기타 참고사항

제22조(사업용 항공기의 경감률) 법 제110조의4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.

제23조(취득물건 전입신고) 타 시·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 자는 제 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2 절 등 록 세

제24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 법 제127조, 제128조, 제128조 의2 및 제128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등기 · 등록자의 주소 · 거소 ·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- 2. 취득 연월일
- 3. 등기 · 등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
- 4. 기타 참고사항

제25조(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) 법 제128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한 "구판사업 등"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률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 3 절 주 민 세

제26조(세율)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개인 : 2,500 원

2. 법인 : 별지와 같음

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.

1. 소득세할 : 소득세액의 100분의 7.5

2. 법인세할 : 법인세액의 100분의 7.5

3. 농지세할 : 농지세액의 100분의 7.5

	,
구 분	세 율
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(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	500,000 원
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
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(대통령	
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수가	×
100 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	
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	350,000 원
으로서 구 관내의 중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	
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	
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	200,000 원
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	
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	
이하인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	
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	
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	100,000 원
으로서 구 판내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	100,000 &
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	
30 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	
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	
기타 법인	50,000 원

제27조(납기등)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.

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.

# 제 4 절 자 동 차 세

제28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자동차의 세율(자동차 1대당 연세액)은 다음과 같다.

#### 1. 승용자동차

성	업	8		ㅂ]		영	업	<del></del>	
배기	량	씨씨당	세액	単 フ	·1	량	T	씨씨당	세액
1,000씨씨 (	이하	18	원	800 %	기씨	이하	1	100	원
1,500씨씨 <	이하	18	. 원	1,000%	비씨	이하		120	원
2,000씨씨 <	이하	19	원	1,500%	비씨	이하	-	160	원
2,500씨씨 여	이하	19	원	2,000 %	비씨	이하		220	원
2,500씨씨 글	초과	24	원	2,500%	비씨	이하		250	원
				3,000 &	비씨	이하		410	원
				3,000*	비씨	초과	2	630	

### 312 (第7回 定期會 - 本會議 第5次 別添)

### 2. 기타 승용자동차

영	업	8	ㅂ]	영	업	8	
	20,000	원		100,	000	원	

### 3. 승합자동차

구 분	영 업 용	비 영 업 용
고 속 버 스	100,000 원	
대형전세버스	70,000 원	
소형전세버스	50,000 원	
대형일반버스	42,000 원	115,000 원
소형일반버스	25,000 원	65,000 원

### 4. 화물자동차

구 분	영 업	8	비 영 업	용
1,000킬로그램 이하	6,600	원	28,500	원
2,000킬로그램 이하	9,600	원	34,500	원
3,000킬로그램 이하	13,500	원	48,000	원
4,000킬로그램 이하	18,000	원	63,000	원
5,000킬로그램 이하	22,500	원	79,500	원
8,000킬로그램 이하	36,000	원	130,500	원
10,000킬로그램 이하	45,000	원	157,500	원

적재정량 10,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,000킬로 그램 이하의 세액에 1,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,000 원,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,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 액으로 한다.

#### 5. 특수자동차

구 분	영 업 용	비 영 업 용
대형특수자동차	36,000 원	157,500 원
소형특수자동차	13,500 원	58,500 원

#### 6. 삼륜이하 소형자동차

영 업 용	비 영 업 용
3,300 원	18,000 원

②제1항에서 "영업용"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"비영업용"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- 제29조(신고의무) 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1.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, 거소,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
  - 2. 자동차의 종류, 명칭, 제조연도, 기관번호,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
  - 3. 정차장
  - 4.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
  - 5. 취득가격
  - 6. 신고사항 발생년월일과 그 사유
  - 7. 기타 참고사항

# 제 5 절 농 지 세

- 제30조(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)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용도, 농지소득금액,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31조(개간·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)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, 사실상 준공연월일·영농개시일·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32조(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) 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피해연월일,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종군자등의 감면신청)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·동원 또는 전사·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·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
- 제34조(감면결정 통지) 구청장은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,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35조(농지의 변동신고등)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·면적·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
  - 2.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
  - 3.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
  - 4.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

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6조(중간예납)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"연 2회 시·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"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1기분 :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

2. 제2기분 :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

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재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 거로 구청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 다.

제1기분 :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
제2기분 :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

제37조(수시부과)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 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.

제38조(농지조사위원회 설치·운영등) ①농지수입금액·농지소득금액 기타농지 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.

②농지조사위원회는 구내의 농지소유자·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.

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
1. 일당: 30,000 원

2. 여비 : 5급공무원 기준

### 제 6 절 담 배 소 비 세

제39조(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)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납세의무자와 주소, 거소,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
- 2.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
- 3. 기타 참고사항

제40조(기장의무)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·수입·매도등 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제 7 절 도축세

제41조(과세표준)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, 그 시가는 구청장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.

제42조(세율)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.

1. 소 : 도살하는 소가격의 1.000분의 10

2. 돼지 :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,000분의 10

- 제43조(징수방법)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 다만,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
- 제44조(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) ①소·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·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.
  - ②소·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때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제45조(신고납입)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, 과세표준액, 세액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외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.
- 제46조(세액의 결정과 경정등) ①도축세의 특별정수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 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.
  -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7조(가산세액) 구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

제48조(장부비치의 의무)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

- 1. 도살 년 월 일
- 2. 도살자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
- 3.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
- 4.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 일
- 5. 기타 참고사항
-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제 8 절 마 권 세

제49조(신고납부등) ①한국마사회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마권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다.
-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50조(장부비치의 의무) 한국마사회는 경마때마다 경마에 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  - 1.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 권의 매수 및 그 금액
  - 2.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액
  - 3.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 적중수
  - 4.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
- 제51조(장부기재사항의 신고기무) 한국마사회는 경기 종료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 의매수 및 그 금액
  - 2.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 적중수
  - 3.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 액
- 제52조(징수교부금 지급) 시장이 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.

### 제 3 장 목 적 세

# 제 1 절 도 시 계 획 세

제53조(납세의무자)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 및 법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(이하 "재산세 과세대장등"이라 한다)의 재산의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.

- 제54조(부과지역의 고시) ①시장은 도시 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
- 제55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소유자의 주소. 거소.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  - 2. 토지의 소재. 지번. 면적 및 용도
  - 3. 건축물의 소재, 종류, 구조, 바닥면적, 연면적 및 용도
  - 4. 교회, 성당,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  -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·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

제56조(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)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
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,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7조(납세관리인 지정신고)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 및 변동이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8조(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)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.

- 1.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
- 2. 재개발사업지구
- 3.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

제59조(세율)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,000분의 2로 한다.

- 제60조(납세고지 및 부과징수)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와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.
- 제61조(신고의무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1. 건축물을 신축, 증축, 개축한 때
  - 2.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
  - 3.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
  - 4.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이 된 때
  - 5. 건축물의 구조 ·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· 면적을 증감한 때
  - 6.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.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
  -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, 종류,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 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 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.

제62조(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) 납세의무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2 절 공동시설세

### 제 1 관 소방시설

- 제63조(납세의무자) 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(소방선이 없는 구는 제외한다) 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 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가한다.
  -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 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.
  -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.

- 제64조(부가지역의 고시) ①시장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견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②시장이 부가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
- 제65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 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  - 1. 소유자와 주소. 거소.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  - 2. 건축물의 소재, 종류, 구조, 바닥면적, 연면적 및 용도
  - 3. 교회, 성당,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  - 4.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
- 5. 선박의 선질 · 명칭 · 정계장 · 구조 · 용도 · 총톤수 또는 적재량
- 제66조(공용,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) ①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·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·선박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 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.

- 제67조(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)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·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·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- 제68조(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)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공동시설세 를 부과한다.
- 제69조(납세고지 및 부과징수) ①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. ②구청장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·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.
- 제70조(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, 소재지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건축물을 신축, 증축, 개축한 때
  - 2.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
  - 3.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

- 4.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
- 5. 건축물의 구조 ·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· 면적을 증감한 때
- 6.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.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
-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, 종류,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71조(선박에 관한 신고의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, 명칭, 건조연월일, 기관번호, 정계장, 용도, 톤수, 취득가격, 과세 사실 발생의 연월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- 1. 선박을 취득한 때
- 2.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
- 3.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
-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
- 5.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

제72조(신고의무 및 직권등재) 납세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물·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 3 절 지 역 개 발 세

### 제 1 관 발 전 용 수

- 제73조(납세의무자)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(양수발전은 제외한다)의 발전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.
- 제74조(비과세,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) 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- 1. 납세자의 주소, 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
- 2. 전력 생산 및 사용 현황
- 3. 국・도・시・군・지방자치단체조합의 무상사용확인서
- 4. 기타 참고사항
- 제75조(과세표준 및 세율)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 원으로 한다.
- 제76조(부과대상지역)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대전직할 시전지역으로 한다.

### 제 2 관 지하수

제77조(정의)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"지하수"라 함은 채수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판매하는 것과 온천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채수한 온천수를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- 2. "음용수라함은"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지하에서 채취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.
- 제78조(납세의무자) 음용수로 판매하거나,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.
- 제79조(과세표준 및 세율)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한다.
- 제80조(부과징수등)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 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대전직할 시 전지역으로 한다.
  - ②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  - ④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은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### 제 3 관 지 하 자 원

제81조(납세의무자)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. 다만, 석탄 또는 광 구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

- 제82조(과세표준 및 세율)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로 한다.
  -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,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소재지 관할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.

제83조(부과대상지역)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지역은 대전직할시 전지역으로 한다.

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